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29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 유성구 가정로 2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표자 원장 김홍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테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안길한, 남문기, 조무연
피고, 항소인	북대전세무서장(경정 전 피고 : 서대전세무서장) 소송수행자 한상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진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2구합3257 판결
변 론 중 결	2014. 8. 21.
판 결 선 고	2014. 1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1)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 미디어분야 연구개발, SW·콘텐츠, IT분야 등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소속 연구원이 위 각 사업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결과물을 발명한 경우 이를 승계한 후 그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용·생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체 등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그 출원서나 특허공보에 발명자로 등록된 연구자인 직원 또는 퇴직자에게 원고의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16조 및 제17조 제1호에 따라 실시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런데 감사원은 2011. 8.경 국세청장에게 원고와 같은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기업체 등에게 실시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여 참여연구원 등에게

1) 당심에 이르러 과세처분에 관한 권한이 제1심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북대전세무서장으로 승계되어 피고도 경정되었으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과세처분도 북대전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기재한다.

지급한 기술료 성과급 등은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과 성격이 다른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징수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9. 27. 및 같은 해 10.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재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합계 9,920,538,620원과 퇴직자에 대한 기타소득세 합계 151,408,810원 및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합계 476,513,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4,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44,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연구원이 원시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인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종업원이 원시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나 관련 특허권 등을 이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는 등 종업원이 원시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와 같이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을 제원으로 수행한 결과 얻어지는 국가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인 원고에게 처음부터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내지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원고가 이를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이 원시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기업체 등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는 출원서나 특허공보에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참여연구원과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 및 퇴직자에게도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은 특허권 등의 권리 이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실시보상금이 아니라 연구장려금(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기술료 수입이라는 제원을 가지고 같은 근거규정에 따라 자신의 소속

종업원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비창작자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창작자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만 비과세로 처리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그 속성상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위 제5호에 열거된 것과 일치하더라도 그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비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이어야 하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실시권 중 전용실시권만을 설정한 경우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을 직무발명보상금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 연구장려금(인센티브) 성격의 금원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보상금과 관련한 원고의 내부규정

이 사건 보상금과 관련한 원고의 내부 규정은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인사규정', '인사관리요령',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등이고,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 근거

가) 지적재산권관리요령은 직무창작을 '창작자의 창작이 원고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고 그 창작을 하게 된 행위가 재직 중의 임무에 속한 것을 말하며, 직무발명과 직무저작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7호), 직무발명을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원고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재직 중의 임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9호).

나) 또한 지적재산권관리요령은 원고가 창작자의 직무창작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한 때 창작자에게 실시보상금, 특별보상금, 등록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6조), 이 중 실시보상금은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로 인하여 연구원에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7조 제1호), 원고의 내부규정인 인사규정(갑 제8호증의 1, 2)은 기술료에 의한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퇴직자 및 기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75조, 제76조).

3) 이 사건 보상금의 산정 방법

가) 2009. 1. 1. 개정되기 전 지적재산권관리요령(이하 '구 지적재산권관리요령'이라 한다) 제17조 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실시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르되, 개인별 지급기준의 지급을 계산은 창작자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9. 1. 1. 개정되기 전 인사규정 제75조 제1항 제2호는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의한 수입액 중 원고가 사용가능한 기술료의 50% 이상을 기술료에 의한 연구장려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종업원의 개인별 창작지분은 아이디어창출이나 연구참여율 등을 고려한 당해 창작연구에 대한 원고 내부의 합리

적인 기여도 평가에 따라 인정되었다.

이 사건 보상금 = 기술료 수입금 × 인사규정 제75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비율
(50% 이상) ×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개인별 창작 지분

나)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이 2009. 1. 1. 제정됨에 따라 기술실시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규정들이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으로 통합되어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에 기술실시보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요령, 지적재산권 관리요령 등이 개정되었으나, 규정의 위치 및 구조만 달라졌을 뿐, 2009년을 전후한 이 사건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동일하다.

4) 이 사건 보상금 외 연구장려금의 지급

한편 인사규정 제72조 및 제76조는 연구수행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공헌이 있는 정규직원, 계약직원 및 임원에 대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원고는 창작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연구수행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도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원시취득자

가)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1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의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데, 특허법 제33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고안·디자인 등의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나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이를 종업원등이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정하는 한편,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으로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나 관련 특허권 등을 이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는 방법으로 종업원등이 원시취득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취득한 때에는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원고가 아닌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이를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0조 제2항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 위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 2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관리규정 제1조 참조), 위 관리규정의 모범이 되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관련 규정 어디에도 종업원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그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발명진흥법이나 특허법 등과 별도로 규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과 관련하여 사설연구기관 기타 사기업체나 국가 및 공공단체 일반과 달리 특별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만 정반대의 취급을 해야

만 할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국한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등에는 위 관리규정의 적용이 없는 점(관리규정 제3조 참조), ③ 위임의 범위나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관리규정 제20조 제2항은, 연구기관과 그 소속 종업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연구개발비를 출연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참여기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다수의 참여주체가 관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사업의 수행 결과물을 어느 참여주체가 소유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국가나 참여기업 기타 다수의 연구기관들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율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은 물론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수행결과물에 대하여도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소속 종업원이 이를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한 결과 얻어지는 국가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주관연구기관인 원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

가) 관련규정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한편 직무발명보상의 정당한 범위에 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은 "직무발명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직무발명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은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전대,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3조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16조 및 제17조 등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으로서, 그 성격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이라 봄이 상당하고, 퇴직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상금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보상금은 그것이 제작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퇴직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 소정의 비과세대상인

기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보상금은 "기술료 수입금 × 인사규정 제75조 제1항 제2호 또는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율(50% 이상) ×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개인별 창작 지분"으로 산정된 것인바, 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처분보상금 중 100분의 50 부분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인사규정 제75조 제1항 제2호나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제4조 제1항은 기술료 수입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술료에 의한 연구장려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술료에 의한 연구장려금은 이 사건 보상금뿐만 아니라 발명자 이외 해당 연구개발에 기여한 자에 대한 연구장려금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기술료 수입 중 이 사건 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인정될 여지도 있는 점, ③ 원고는 출원서나 특허공보에 발명자로 등록된 연구자인 직원 또는 퇴직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만 비과세 처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처리한 점, ④ 원고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관련자들에게 개인별로 창작지분을 인정하는 과정에 특별히 어떤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직무발명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는 것인데, 원고는 원고의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금을 산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일회적이 아닌 계속·반복적 성격의 금원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종업원으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받아 제3자에게 직무발명을 사용·생산에 실시하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기술료 내지 실시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내용여하에 따라 이를 일회적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분할된 일정액 또는 제품의 매출 등에 비례한 변동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기술료 내지 실시료를 재원으로 그 수입이 발생한 때에 즈음하여 지급되는 이 사건 보상금을 두고 그것이 반드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기업체 등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는 출원서나 특허공보에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참여연구원 및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에게도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도 연구장려금에 해당할 뿐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사규정 제72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연구장려금은 창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수행에 직·간접적인 공헌이 있는 연구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16조 및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이 사건 보상금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승계한 창작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점, 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연

구장려금과 그렇지 아니한 이 사건 보상금은 비록 그 산정방법을 일부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급근거와 지급대상, 지급취지 등이 전혀 달라서 그 성격상 양자는 서로 구별하여 취급해야만 할 것인 점,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실시권 중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포함되나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소속 종업원등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이상 사용자인 원고가 제3자에게 해당 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여 기술료를 지급받을지,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기술료를 지급받을지 여부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의 전용실시권 설정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대상의 하나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등이 과세되어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훈
	판사	김성훈
	판사	김상일

별지1

이 사건 징수처분

단위 : 원

처분일	세목	과세년도	원천세	가산세	합계
2011. 10. 1.	근로소득세	2006년	662,996,020	66,299,602	729,295,620
2011. 10. 1.		2007년	2,124,427,440	212,442,744	2,336,870,180
2011. 10. 1.		2008년	2,287,444,380	228,744,438	2,516,188,810
2011. 10. 1.		2009년	2,064,409,530	206,440,933	2,270,850,480
2011. 10. 1.		2010년	1,947,558,680	119,774,858	2,067,333,530
2011. 10. 1.		계	9,086,836,050	833,702,595	9,920,538,620
2011. 9. 27.	기타소득세	2006년	9월	20,261	31,080
2011. 10. 1.			10월	1,357,963	1,493,750
2011. 10. 1.			11월	35,714	39,280
2011. 10. 1.			12월	4,999,583	5,499,540
2011. 10. 1.		2007년	4월	1,544,482	1,698,930
2011. 10. 1.			5월	10,060,184	11,066,200
2011. 10. 1.			6월	403,989	444,380
2011. 10. 1.			7월	64,421	70,860
2011. 10. 1.			8월	352,774	388,050
2011. 10. 1.			9월	4,574,599	5,032,080
2011. 10. 1.			10월	132,466	145,710
2011. 10. 1.			11월	7,144,373	7,858,810
2011. 10. 1.			12월	13,741	15,110
2011. 10. 1.		2008년	2월	24,764	27,240
2011. 10. 1.			5월	3,184,867	3,503,350
2011. 10. 1.			6월	442,732	487,000
2011. 10. 1.			7월	326,754	359,420
2011. 10. 1.			8월	913,800	1,005,180
2011. 10. 1.			9월	7,219,224	7,941,140
2011. 10. 1.			10월	5,017,295	5,519,020
2011. 10. 1.			11월	2,836,082	3,119,690
2011. 10. 1.			12월	2,376,064	2,613,670
2011. 10. 1.		2009년	1월	248,261	273,080
2011. 10. 1.			2월	16,940	18,630
2011. 10. 1.			3월	6,839,536	7,523,480
2011. 10. 1.			4월	3,232,962	3,556,250
2011. 10. 1.			5월	1,073,341	1,180,670

2011. 10. 1.	2010년	6월	7,223,828	722,382	7,946,210
2011. 10. 1.		7월	23,945,133	2,394,513	26,339,640
2011. 10. 1.		8월	3,867,970	386,797	4,254,760
2011. 10. 1.		9월	4,052,719	405,271	4,457,990
2011. 10. 1.		10월	943,752	94,375	1,038,120
2011. 10. 1.		11월	806,934	80,693	887,620
2011. 10. 1.		12월	2,512,244	251,224	2,763,460
2011. 10. 1.		2월	21,239	2,123	23,360
2011. 10. 1.		3월	10,618,384	1,061,838	11,680,220
2011. 10. 1.		4월	999,137	99,913	1,099,050
2011. 10. 1.		6월	3,147,952	314,795	3,462,740
2011. 10. 1.		7월	196,453	19,645	216,090
2011. 10. 1.	법인세	8월	3,924,001	392,400	4,316,400
2011. 10. 1.		9월	6,999,852	699,985	7,699,830
2011. 10. 1.		10월	583,804	58,380	642,180
2011. 10. 1.		11월	1,986,156	198,616	2,184,770
2011. 10. 1.		12월	1,398,352	139,835	1,538,180
2011. 10. 1.		계	137,693,082	13,715,905	151,408,980
2011. 10. 1.		2006년		76,513,530	76,513,530
2011. 10. 1.		2007년		100,000,000	100,000,000
2011. 10. 1.		2008년		100,000,000	100,000,000
2011. 10. 1.		2009년		100,000,000	100,000,000
2011. 10. 1.		2010년		100,000,000	100,000,000
2011. 10. 1.		계		476,513,530	476,513,530
	합계				10,548,460,960

별지2

관계 법령 등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4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②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제1항·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특허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정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달조직(이하 "전달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달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달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 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2010. 7. 26. 대통령령 제22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4.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국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라 함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 (등록보상금) ① 특허정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처분보상금) ① 특허정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특허정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장이 기술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

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별지3

■지적재산권관리요령(2009. 1. 1. 개정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적재산권을 총칭한다.
2.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총칭한다.
6. "창작"이라 함은 지적재산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객체를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만든 사람을 "창작자"라고 한다.
7. "직무창작"이라 함은 창작자의 창작이 연구원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고 그 창작을 하게 된 행위가 연구원 재직 중의 임무에 속한 것을 말하며, 직무발명과 직무저작을 포함한다.
9. "직무발명"이라 함은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연구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연구원 재직 중의 임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권리승계) ① 창작자의 직무창작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는 연구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16조(보상의 구분) 연구원은 창작자의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창작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을 지급한다.

1. 실시보상금
2. 특별보상금
3. 등록보상금

제17조 (보상금) 지적재산권의 실시에 따라 직원의 직무창작이 연구원에 기여하였을 때에는 창작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실시보상금
실시보상금은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로 인하여 연구원에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지급기준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인별 지급기준의 지급율 계산은 창작지분으로 한다.
2. 특별보상금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이 연구원에 기여한 공로가 클 때 따로 지급할 수 있다.
3. 등록보상금
등록보상금은 국내특허 또는 국제특허 등록시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보상금의 지분지급)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창작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인사규정(2009.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연구장려금) 연구장려금은 연구수행에 공헌이 있는 정규직원, 계약직원 및 임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74조(지급 등) 연구장려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인사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제75조(지급재원) ① 연구장려금의 지급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사업에 의한 연구장려금 : 연구사업 협약에 의해 연구장려금으로 할당된 예산 및 기타 재원
2. 기술료에 의한 연구 장려금 :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의한 수입액 중 연구원이 사용가능한 기술료의 50% 이상으로 한다. 단,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여 징수한 기술료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3. 기타 연구장려금 재원으로 확보된 예산

제76조(지급대상) ①연구 장려금은 연구수행에 작·간접으로 참여한 참여자 및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하되, 재직 중인자로 한다. 다만, 제75조 제1항 제2호의 기술료에 의한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에는 퇴직자 및 "기여자"를 포함하며, "기여자"의 선정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7조(개인별 지급기준) 연구 장려금은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당시 참여자의 참여율과 공헌도를 고려하여 개인별 지급율을 산출하여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세부지급기준은 인사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인사관리요령(2009.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개인별 지급기준) ①작·간접참여인력의 개인별 지급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개인별 연구공헌도 : 별표 제27호를 참조하여 해당 연구과제 사업 책임자(해당 사업 책임자가 없을 경우 상위부서장)가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개인별 지급율의 계산 : 연구참여율 × 참여기간 × 연구공헌도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17조(보상금) 지적재산권의 실시에 따라 직원의 직무창작이 연구원에 기여하였을 때에는 창작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실시보상금
실시보상금은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로 인하여 연구원에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지급기준은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에서 정한다.
2. 특별보상금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이 연구원에 기여한 공로가 클 때 따로 지급할 수 있다.
3. 등록보상금

등록보상금은 국내특허 또는 국제특허 등록시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은 별도로 정한다.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2009. 1. 1. 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및 외부 기여자 등에 대한 기술의 실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술실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 출연처의 관련 규정이나 협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개발결과"라 함은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 및 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용(제품의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하는 행위를 말하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원이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기술이전계약 및 지적재산권실시계약을 말한다.
4.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가로 받은 금원을 말한다.
5. "기술실시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발생한 기술료 수입금 중 일부를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및 기술마케팅기여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원기술개발기여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이전기술(지적재산권 포함)의 확보에 기여한 자를 말하며 창작자 및 창작기여자를 포함한다.
8. "추가기술개발기여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수에 따라 추가로 진행된 기술개발과제(이하 "추가기술개발과제"라 한다)에 참여하여 연구개발결과와 확보에 기여한자를 말한다.
9. "기술마케팅기여자(이하 "마케팅기여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통상적 업무 수행이 아닌 실질적인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 가. 이전대상 기술의 수요기술 발굴·협상, 라이선싱, 현장지도 등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 나. 이전기술에 대하여 사업화 후속지원, 중재·소송·심판, 권리의 양도·확보·분석,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 다. 지적재산권실시계약과 관련하여 표준특허 발굴, 표준화 활동의 수행·자문·감독, 침해 예방, 침해 억제 등의 신고·적발 등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12. "창작자"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프로그램, 반도체회로설계 등 지적재산권을 직접 창안한 자를 말한다.

13. "창작기여자"라 함은 창작자기 아닌 연구장 중 연구사업의 수주, 발명행위 등에 대한 보조 지원, 발명 등과 관련된 표준화 활동의 수행, 특허권의 확보 등에 기여한 자로서 지적재산관관리요령에 의한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제4조(지급재원) ①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재원은 기술료 수입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마케팅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술료 수입 총액의 100분의 5로 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수입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및 마케팅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재원의 규모 및 배분기준 등은 관계 법률, 출연처의 관련 규정이나 협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①보상금 지급은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및 마케팅기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기술개발기여자 및 추가기술개발기여자는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하고, 마케팅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술료 지급시점의 재직자로 한정한다.

제6조(지급기준 및 확인) ①원기술개발기여자 및 추가기술개발기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각 연구책임자가 별표 제1호와 같이 개인별 점수를 산출하고 개별 확인을 거쳐 확정하며, 기술료 배분율은 해당 연구책임자간 사전 협의의 거쳐 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실시계약에 따른 창작자 및 창작기여자의 보상금 지급액은 지적재산관관리요령에 의한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개인별 창작 지분에 따른다.

■인사규정

제75조(지급재원) ① 연구 장려금의 지급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기술료에 의한 연구 장려금 :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에서 정함.

제76조(지급대상) ①연구 장려금은 연구수행에 작·간접으로 참여한 참여자 및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하되, 재직 중인자로 한다. 다만, 기술료에 의한 연구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에 따른다.

제77조(개인별 지급기준) 연구 장려금은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당시 참여자의 참여율과 공헌도를 고려하여 개인별 지급율을 산출하여 차등 지급할을 원칙으로 하되, 그 세부지급기준은 인사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인사관리요령

제81조(개인별 지급기준) ①작·간접참여인력의 개인별 지급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개인별 연구공헌도 : 별표 제27호를 참조하여 해당 연구과제 사업 책임자(해당 사업 책임자가 없을 경우 상위부서장)가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개인별 지급율의 계산 : 연구참여율 × 참여기간 × 연구공헌도
3. 기술료에 의한 연구 장려금 :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에서 정함.